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7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운영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7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 및 적용 범위(안 제1조 ~ 제3조).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.
- 지원계획 수립(안 제5조).
- 실태조사(안 제6조).
-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(안 제7조).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8조).

- 민간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 ~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- 목적, 정의 및 적용 범위(안 제1조 ~ 제3조).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.
- 지원계획 수립(안 제5조).
- 실태조사(안 제6조).
-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(안 제7조).
-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8조).
- 민간단체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 ~ 제10조).

다. 검토의견

-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의하면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음. 놀 권리는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권리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은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